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3774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층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와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 신설로 센터의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강화하며, 반려문화 홍보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 (안 제9조제2항)
- 나.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 감면 및 진료 범위 확대 (안 제9조제2항)
- 다. 반려문화 조성 및 발전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 (안 제18조)
- 라. 홍보활동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9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차 : 2026. 4. 2. ~ 4. 22.(20일)
- 2차 : 2026. 4. 30. ~ 5. 20.(20일)

- 나) 예고결과 : 1차 입법예고 결과 의견(1건) 제출, 제출된 의견 일부 반영하여 2차 입법예고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나) 경 기 도 :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인수·유실·유기 등)을 입양한 사람 중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 등 반려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                    | 가족문화과                   |
|-------------|--------------------|-------------------------|
| 입<br>안<br>자 | 담당관·과장·소장<br>직위·성명 | 가족문화과장<br>이 회 숙         |
|             | 팀장<br>직위·성명        | 반려문화팀장<br>지 연 정         |
|             | 담당자<br>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br>노 경 연(☎5612) |

[별표 1]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제9조 관련)

### 1. 일반시민 소유의 반려동물

| 진료범위                    | 진료비                  |
|-------------------------|----------------------|
| 가. 기초상담 및 진찰            | 무료                   |
| 나. 동물등록(내장칩)            | 제9조제3항에 따라<br>책정한 금액 |
| 다. 광견병 예방접종             |                      |
| 라.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                      |

### 2.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소유의 반려동물

| 진료범위                                 | 진료비                  |
|--------------------------------------|----------------------|
| 가. 기초상담 및 진찰                         | 무료                   |
| 나. 동물등록(내장칩)                         |                      |
| 다. 광견병 예방접종                          |                      |
| 라.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                      |
| 마. 안압측정검사                            |                      |
| 바.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 제9조제3항에 따라<br>책정한 금액 |
| 사. 종합백신 접종                           |                      |
| 아. 종합 혈액검사                           |                      |
| 자. 코로나 백신                            |                      |
| 차. 켄넬코프 백신                           |                      |
| 카. 인플루엔자 백신                          |                      |
| 타. 심장사상충 검사                          |                      |
| 파. 파보바이러스 검사                         |                      |
| 하. 3콤보 키트 검사<br>(파보 장염, 코로나장염, 지알디아) |                      |

비고: 제2호바목부터 하목까지의 진료 중 백신의 연간 접종 횟수는 제한될 수 있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제9조제2항 관련)

|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u>별표와 같다.</u>       |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br>----- <u>별표 1과 --.</u>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u>별표 2와 같다.</u>                                |
| <u>&lt;신설&gt;</u>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u>&lt;신설&gt;</u>                                          |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인수·유실·유기 등)을 입양한 사람 중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제18조(포상) 시장은 <u>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 등 반려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
| <u>&lt;신설&gt;</u>                                          |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u>반려문화 조성</u>                                                                     |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  
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제9조 관련)

| 구<br>분 | 진료범위                            | 진료비                       |                           | 비<br>고 |
|--------|---------------------------------|---------------------------|---------------------------|--------|
|        |                                 | 일반                        | 제9조제2항<br>에 따른<br>대상자     |        |
| 1      | 기초상담<br>및 진찰                    | 무료                        | 무료                        |        |
| 2      | 동물등록<br>(내장칩)                   | 제9조제3항<br>에 따라 책<br>정한 금액 | 무료                        |        |
| 3      | 광견병 예<br>방접종                    | 제9조제3항<br>에 따라 책<br>정한 금액 | 무료                        |        |
| 4      | X-Ray 및<br>혈액검사<br>(전혈구 검<br>사) | 제9조제3항<br>에 따라 책<br>정한 금액 | 무료                        |        |
| 5      | 심장사상충<br>예방접종                   |                           | 제9조제3항<br>에 따라 책<br>정한 금액 |        |
| 6      | 종합백신<br>접종                      |                           | 제9조제3항<br>에 따라 책<br>정한 금액 |        |

비고: 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진료는 연간 접종  
횟수가 제한될 수 있음.

[별표 1]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제9조 관련)

1. 일반시민 소유의 반려동물

| 진료범위                        | 진료비                     |
|-----------------------------|-------------------------|
| 가. 기초상담 및 진찰                | 무료                      |
| 나. 동물등록(내장칩)                | 제9조제3항에<br>따라<br>책정한 금액 |
| 다. 광견병 예방접종                 |                         |
| 라. X-Ray 및 혈액검사<br>(전혈구 검사) |                         |

2.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소유의 반려동물

| 진료범위                                | 진료비                     |
|-------------------------------------|-------------------------|
| 가. 기초상담 및 진찰                        | 무료                      |
| 나. 동물등록(내장칩)                        |                         |
| 다. 광견병 예방접종                         |                         |
| 라. X-Ray 및 혈액검사<br>(전혈구 검사)         |                         |
| 마. 안압측정검사                           |                         |
| 바.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 제9조제3항에<br>따라<br>책정한 금액 |
| 사. 종합백신 접종                          |                         |
| 아. 종합 혈액검사                          |                         |
| 자. 코로나 백신                           |                         |
| 차. 캔넬코프 백신                          |                         |
| 카. 인플루엔자 백신                         |                         |
| 타. 심장사상충 검사                         |                         |
| 파. 파보바이러스 검사                        |                         |
| 하. 3콤보 키트 검사<br>(파보장염, 코로나장염, 지알디아) |                         |

비고: 제2호바목부터 하목까지의 진료 중 백신의 연간  
접종 횟수는 제한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 복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진료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반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하 “공공진료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진료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원활한 진료 및 시민편의를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구조·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진료대상)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한한다.

제9조(진료범위 및 진료비) ①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등록법」 제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③ 진료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시 및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시의 진료비용 현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시점에 익년 진료비를 재책정하여 공개한다.

제10조(자격확인)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진료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확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진료인력) ① 시장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수의사를 공공진료센터에 두고,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진료센터에는 수의사 외에 업무 및 진료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진단서 등) 시장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3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진료부를 기재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 수혜자의 의무 등) ①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정규강좌, 캠페인 등 반려문화 행사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반려인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 반려문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 ① 시장은 공공진료센터의 대외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명예소장(이하 “명예소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

2. 반려동물 세미나, 돌봄특강 등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명예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명예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동물병원·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 자치법규명 :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2. ~ 4. 22.(20일간)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1건 / 1건 내 다수 의견 제출)

| 순 | 의견 제시자      |       |           | 제출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                                                                                     | 수용 여부 |
|---|-------------|-------|-----------|----------------|-------------------------------------------------------------------------------------|-------|
|   | 접수일         | 접수 방법 | 제출자 (단체명) |                |                                                                                     |       |
| 1 | 2026. 4.10. | 메일    | 김포시 수의사회  | 제출의견           | 안 제9조 제2항 관련<br>(진료범위 및 진료비 감면대상)<br>- 75세 이상 노령층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수용    |
|   |             |       |           | 주관부서 의견        | 개정안 삭제<br>- 75세 이상 노령층 감면 대상에서 제외                                                   |       |
|   |             |       |           | 제출의견           | 안 제9조 제2항 관련<br>(진료범위 및 진료비 감면대상)<br>-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진료혜택 제외 또는 축소                | 일부 수용 |
|   |             |       |           | 주관부서 의견        | 개정안 수정<br>- 진료범위는 확대하되, 유기동물입양자에 대해 입양일로부터 1년에 한해 취약계층에 준하는 진료 지원                   |       |
|   |             |       |           | 제출의견           | <별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 (제9조 관련)<br>- 일반시민 대상 진료범위 확대 재검토 (일반시민 안압측정검사 항목 삭제요청) | 수용    |
|   |             |       |           | 주관부서 의견        | 개정안 삭제<br>- 일반시민 진료 범위 기존 유지 (일반시민 안압측정검사 항목 삭제)                                    |       |